

현 규정

식품 의약품 감독청의
가공식품의 화학오염 최대 한도에
관한
2018년 8호
식품 의약품 감독청 책임자

제 6 장
폐업 규정

제 9 조

본 규정이 효력을 발휘할때 가공 식품의 화학 오염 최대 한도를 규정하는 한 식품의 미생물 및 화학 오염 최대 한계 결정에 관한 2009년 식품 의약품 안전청장 HK.00.06.1.52.4011의 규정을 폐지한다.

제 10 조

해당 규정은 공포일에 발효된다.

자카르타에서 공포

2018년 06월 26일

가공된 식품 내에서 ((DIOXINE, 3-MONOXLOROPROPANE-1,2-DIOL (3-MCPD),
POLYCIKIC AROMATIC HYDROCHARBON (AROMATIC POLYCYCLIC HYDROCARBON /
PAH))에 대한 최대한도

3.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(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/ PAHs)

NO	식품 유형	최대 한도 (ppb 또는 µg / kg)	
		Benzo[a]pyrene	Total benzo[a]pyrene, benz[a]anthracene, benzo[b]fluoranthene, chrysene
1	원료또는 바로 소비가능한 코코넛 오일	2,0	20,0
2	훈연 육가공품	2,0	12,0
3	훈연 생선	5,0	12,0
4	가열처리된 훈연 육가공품	5,0	12,0
5	훈연 Kekerangan	6,0	35,0
6	MP-ASI(곡물 기반)	1,0	1,0
7	유아용 포물라, 고급 포물라 및 성장 포물라	1,0	1,0
8	특수의료용도식품(유아용포함)	1,0	1,0

이전 규정 (최소 규정)

식품 의약품 감독청

인도네시아 공화국

미생물 및 화학오염 최대한도

관한

No. HK.00.06.1.52.4011

식품 의약품 감독청 책임자

가공된 식품 내에서 ((DIOXINE, 3-MONOXLOROPROPANE-1,2-DIOL (3-MCPD),
POLYCIKIC AROMATIC HYDROCHARBON (AROMATIC POLYCYCLIC HYDROCARBON /
PAH))에 대한 최대한도

Benzo[a]piren

NO	식품 유형	최대 한도 (ppb 또는 µg / kg)
1	기름과 지방	2
2	영유아 식품	1
	a. 곡물기반의 영유아 식품	1
	b. 고급 포물라 우유 및 포물라	1
	c. 영유아용을 포함한 특수의료용 식품	1
3	훈연육가공품	5
4	훈연생선가공품	2
5	훈연된 생선(Kekerangan 제외)	5
6	즉석식품	10
7	훈연 갑각류 및 두족류 가공품	5
8	식수	0,2 mcg/l